

2025년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학 운영 사업 업무 매뉴얼

2025. 7.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한국대학교육협의회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본 매뉴얼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교육부 「2025년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운영 기본 계획」 등에 근거하여 사업 운영에 대한 기본원칙과 세부 사항을 제시한 것임. 본 사업 운영 매뉴얼에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상위법에 따라 결정함.

CONTENTS

PART

I		총칙	1
----------	--	----------	---

PART

II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학 운영 사업 개요	5
-----------	--	---------------------------------	---

PART

III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학 운영 사업 세부 추진계획	9
		1. 사업 추진체계 및 절차	11
		2. 세부사업별 지원 내용	12
		3. 사업 선정 및 운영 계획	15
		4. 사업 변경 사항	19
		5. 성과관리	20
		6. 사업비 집행 및 관리	21
		7. 사업 추진일정	25

P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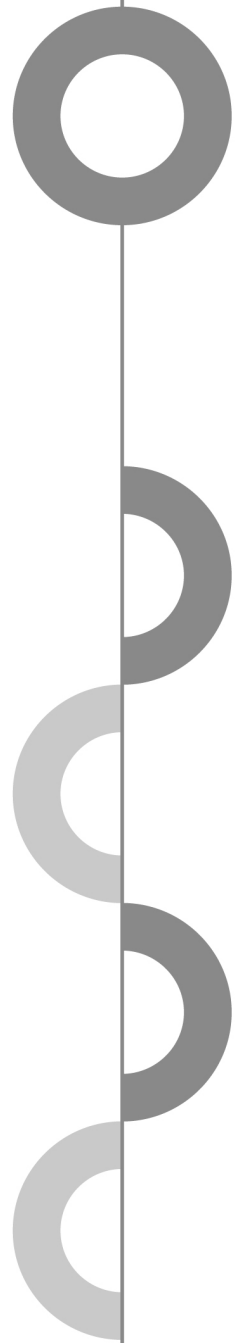
IV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학 운영 사업 컨설팅	31
-----------	--	----------------------------------	----

부록		2025년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학 운영 사업 공고	37
		(사업신청서 및 관련 서식)	

CHAPTER

I

총칙



총칙

1. 목적

- 본 매뉴얼은 「2025년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학 운영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목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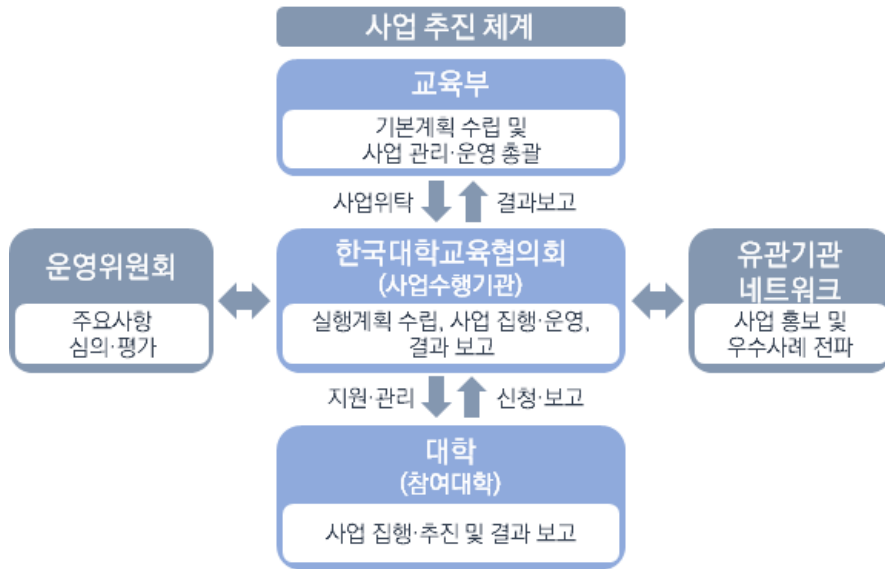
2. 적용 범위

- 본 매뉴얼 적용 대상은 「2025년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학 운영 사업」 선정 대학임
- 본 매뉴얼 적용 기간은 「2025년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학 운영 사업」의 사업기간으로 한정함
 - (사업기간) 선정된 대학의 사업운영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 신청서의 사업 시작일로부터 사업 종료일까지로 함

3. 운영주체별 역할

- [교육부]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관리·운영 총괄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업의 관리·운영 수행
 - 사업 세부추진계획 수립, 지원금 교부 및 집행관리
 -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사업 결과보고 및 만족도 조사
 - 역량강화 연수 및 컨설팅, 우수사례 공유 및 유공자 표창, 사업홍보 등
- [운영위원회] 사업 주요사항 심의, 사업 선정 평가, 의견 수렴 등
-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학]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 권역별 장애학생 맞춤형 진로·취업 지원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활동 지원 프로그램 등 운영

- 권역별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한 참여 대학, 학생 확대 및 우수 프로그램 공유·확산
 - 타 대학을 위한 진로·취업 지원, 보조기기 지원, 교육자료 공동 개발, 교육지원 인력 풀 관리 등
 - 발달장애 학생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성과 공유
 -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학 운영을 위한 전담 인력 배치
- [유관기관] 장애인 평생교육 및 고등교육, 특수교육 전문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사업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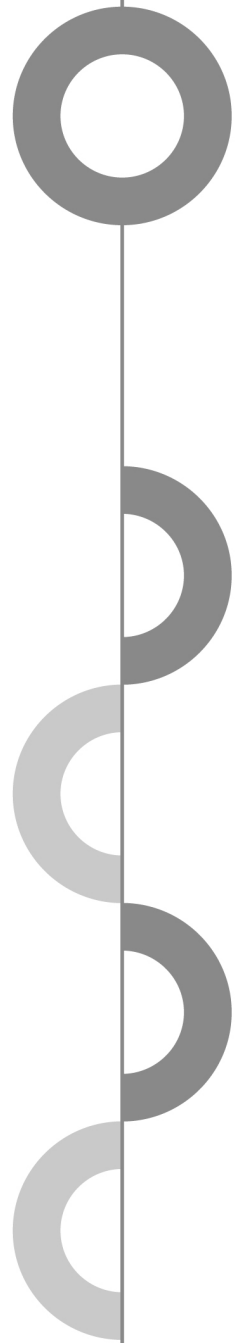
4. 기타

- 다른 법령 또는 규정 등에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함
- ※ 본 매뉴얼에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상위법에 따름

CHAPTER

II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학 운영 사업 개요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학 운영 사업 개요

1. 추진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 제1항 제10호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4조
- 「진로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2. 사업기간

- 2025. 1. 1. ~ 2025. 12. 31.(12개월)

3. 주요내용

- 권역별 장애대학생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장애학생 지원 선도대학’(진로·취업지원, 통합지원, 발달장애 특성화 3개 유형) 지정·운영

4. 지원대상

- 진로·취업 지원 유형 신규 선정 7~8교
- 통합 지원 유형 선정 2~3교('24년 선정 대학 중 희망 대학)
- 발달장애 특성화 유형 신규 선정 1교
※ 「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

5. 지원예산

- 총 700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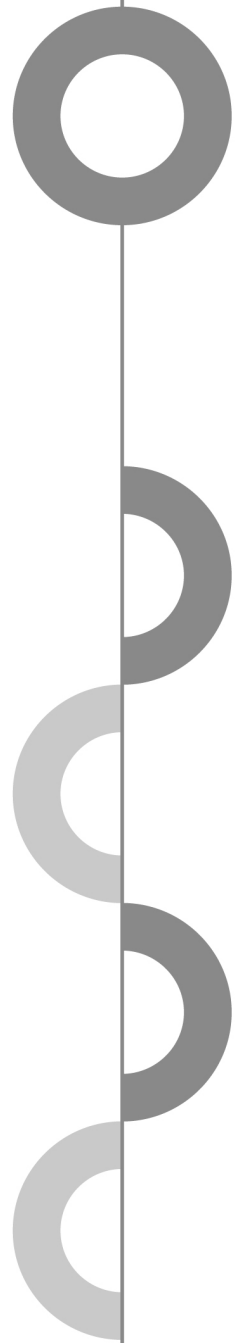
6. 지원내용

- (진로·취업 지원 유형) 신규 선정 7~8교, 교당 50백만원 내외 지원
- (통합 지원 유형) '24년에 선정되어 장애대학생 지원 사업 운영 경험이 있는 대학* 중 2~3교 선정, 교당 100백만원 내외 지원
 - * 가톨릭관동대, 강남대, 경민대, 나사렛대, 대구대, 부산대, 인천대, 전북대, 제주대, 한경국립대
- (발달장애 특성화 유형^{신규}) 신규 선정 1교, 교당 100백만원 지원

CHAP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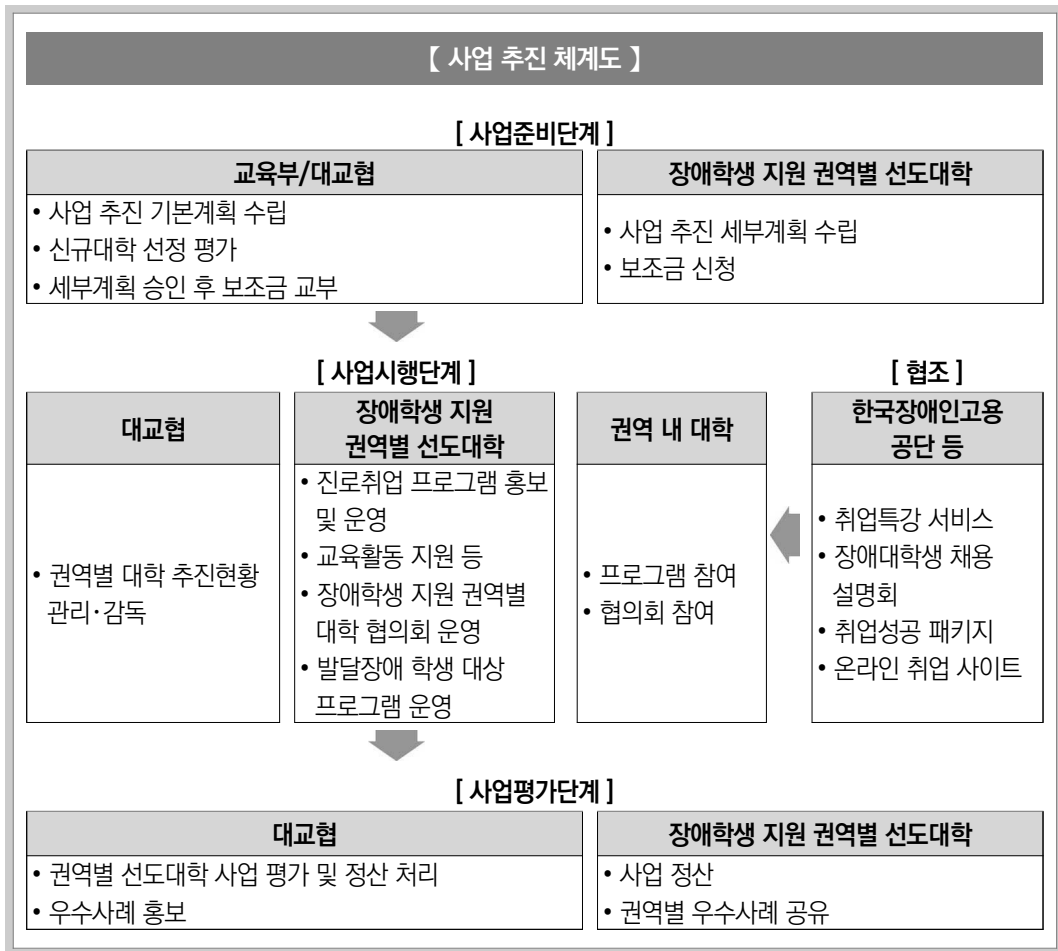
III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학 운영 사업 세부 추진계획



1 사업 추진체계 및 절차

가. 사업 추진체계



나. 유관기관의 협력 체계 구축 운영

- (기관 협업) 고용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 등과 연계·협력을 통해 취업 준비부터 취업 후 적응까지 밀착 지원

* 장애인고용기금, 장애학생취업지원사업,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장애인보조공학기기

※ 진로·취업 박람회 연계, 취업자 진로·취업 멘토링, 모의 면접, 장애 유형별 취업 정보 제공 등

2 세부사업별 지원 내용

가. 목표 및 필요성

- 장애대학생 지원 체계 강화를 통해 장애학생의 실질적 학습권을 보장하고, 맞춤형 진로·취업 지원을 통해 사회통합 활성화
- 권역별 장애대학생 대상 진로·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포함한 교육활동 및 권역별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역량 강화 지원
- 발달장애 학생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성과 공유·확산 지원

나. 주요사항

□ 공통사항

- (연계·협력 내실화)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학을 중심으로 통합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한 진로·취업교육 규모화·효율화 추진 및 성과 확대
※ 권역별로 유사 전공, 희망 진로, 동일한 장애유형 등을 고려하여 공동으로 취업 캠프, 현장실습, 채용박람회 등 개최, 권역별 우수사례 전파 등
-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 장애인고용공단, 지역 산업체, 지자체 등과 협업 강화를 통해 지역 내 장애인 취업 여건과 지역 특성을 반영
- (수혜자 확대를 위한 적극적 홍보) 관련 협의체*를 통한 홍보 강화로 권역 내 대학 참여 활성화 및 장애대학생 진로·취업 지원 기회 확대
* 전국대학교 장애학생지원협의회

□ 진로·취업 지원 유형

-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취업 캠프, 채용 박람회, 멘토-멘티 프로그램, 온라인 특강 등 학생 수요와 만족도 고려한 다양한 참여 기회 제공

-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장애학생 개인의 적성·소질에 따른 진로설계 지원을 강화하여 진로·취업지원 효과성 제고
- (취업 역량 강화 지원) 현장 직무역량 및 문제 해결력 제고를 위해 현실 적합성 높은 프로그램 운영으로 장애학생 취업 역량 향상 지원
- (장애학생 지원 인력 전문성 강화) 장애학생 지원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멘토 역할 수행 및 권역별 협의회 운영

□ 통합 지원 유형

- (통합 지원 대학의 역할 정립) ‘장애학생 지원 선도대학’으로서 권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장애학생 대상 진로·취업 지원부터 교육활동 지원까지 다양한 역할 수행

【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학 역할(예) 】

구분		진로·취업형	통합형
1	장애대학생 진로·취업 지원	• 권역 내 장애대학생 대상 진로·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권역 및 전국 단위 장애대학생 대상 진로·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전국 단위 장애대학생 대상 진로·취업 박람회 등 운영
2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 장애대학생 지원을 위한 보조기기 구비 및 타 대학 필요 시 보조기기 지원 • 공통 과목 등 교육자료 공동 개발·배포
3	권역 내 대학 멘토 지원	•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대학 협의회 운영 • 장애학생 지원 업무 담당자 또는 대학 대상 ‘장애학생 지원’ 관련 멘토 역할	•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대학 협의회 지원 • 전국 단위 교육지원인력 풀 관리
4	협력 강화	• 통합형 대학 프로그램 및 사업 운영 협조 및 지원	•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대학 담당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 장애학생 지원 관련 매뉴얼 제작·배포 등

□ 발달장애 특성화 유형

- (발달장애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발달장애 학생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발달장애 학생 지원 확대) 발달장애 학생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발달장애 학생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성과 공유 및 확산 추진

다. 사업 추진 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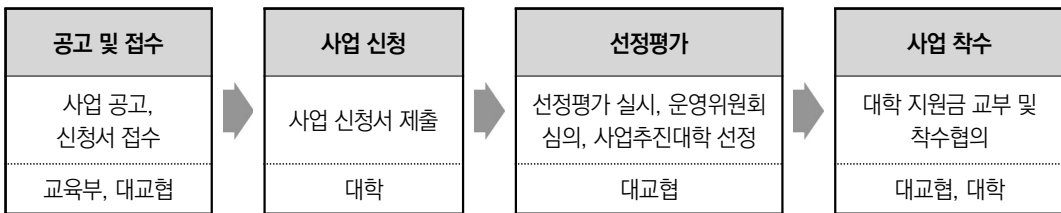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준수 범위 내 대학에서 자율적 운영
 - 사업비 집행실적을 수시로 점검하고,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립된 사업 계획 준수 및 관리 철저
- 사업비 관리 철저
 - 다른 보조사업, 재정지원사업과 중복 수혜가 되지 않도록 유의
- 사업관리 및 대학 책무성 확보
 - 사업계획서에 따라 추진하고, 주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함
 - ※ 집행을 부진 대학은 정상 추진 여부를 점검하여 대학의 국고보조금 감액 조정, 사업 참여 제한 등을 조치할 수 있음
 - ※ 불용액 발생(예상) 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사전 협의 바람

3 사업 선정 및 운영 계획

가. 사업 대학 공고 및 선정

- (추진방향) 장애학생의 진로·취업 지원을 포함한 교육활동 전반에 필요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권역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대학 선정
-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학은 진로·취업 지원 유형, 통합 지원 유형, 발달장애 특성화 유형으로 구분하여 선정함. 단, 통합 지원 유형은 기존 '장애학생 맞춤형 진로 및 취업지원 사업 대학' 10교 중 희망하는 대학 대상으로 선정

〈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학 선정 절차 〉



나. 진로·취업 지원 유형 선정 계획

- (선정 규모)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학 - 진로·취업 지원 유형 7~8교
- (선정 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 (선정 조건)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대학, 전담인력 인건비에 대한 일정 부분 대학 부담(대응투자)
 - ※ 총 사업비의 50% 범위에서 인건비 사용 가능
- (사업 기간) 2025. 1. 1. ~ 12. 31.(12개월)
- (선정 평가 방법) 사업공모에 따른 사업계획서 서면평가 및 필요시 대면 평가를 통해 평가점수를 종합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 선정 결과에 따라 해당 대학의 소재 및 권역별 장애학생 수('24.8. 대학정보공시 기준) 등을 고려하여 대학별 담당 권역 조정 가능

- (평가 지표) 대학 현황, 사업운영 여건(전담인력 배치 현황 및 전문성 강화 방안 포함), 프로그램 운영 계획, 예산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구분	영역	세부 지표	평가 비중	
정량	대학현황	• 장애대학생 수(10)	10	100
정성	사업운영 여건	• 학교 비전 및 센터와의 연계 전략(5) • 센터 구성 및 업무 현황(5) • 전담인력 배치 현황 및 전문성 강화 방안(10) • 센터 인프라(시스템 포함) 및 유관기관 연계 현황(10)	30	
	프로그램 운영 계획	• 진로·취업 관련 프로그램의 우수성(15) • 권역 내 대학 지원 전략의 우수성(15) • 지역사회 연계 방안의 우수성(10) • 사업 성과 확산 및 관리의 우수성(10)	50	
	예산 계획	• 예산 계획의 적절성(10)	10	

다. 통합 지원 유형 선정 계획

- (선정 규모)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학 - 통합 지원 유형 2~3교
※ 기존 장애학생 맞춤형 진로 및 취업지원 대학 중 희망 대학을 대상으로 사업 계획 및 프로그램 운영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예정
※ 선정교의 담당 권역은 장애학생 수 및 대학 수 등을 고려하여 배분 예정
- (선정 대상) 기존 사업대학 10교('24년 선정 대학) 중 희망 대학
- (사업 기간) 2025. 1. 1. ~ 12. 31.(12개월)
- (선정 방법) 희망 대학 대상 사업계획서 제출 및 사업계획서 서면평가 및 필요시 대면 평가를 통해 평가점수를 종합하여 고득점 순으로 지정
- (평가 지표) 기존 운영 성과, 사업운영 여건(전담인력 배치 현황 및 전문성 강화 방안 포함), 프로그램 운영 계획, 예산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구분	영역	세부 지표	평가 비중	
정량	기존 운영 성과	• 프로그램 운영 건수(2.5) • 프로그램 참여 인원 및 비율(2.5) • 프로그램 참여 대학 및 비율(2.5) • 장애학생 고용네트워크 연계 건수(2.5)	10	100
	기존 운영 성과	• 운영 프로그램의 다양성 및 적절성(5) • 장애학생 고용네트워크 연계의 우수성(5) • 사업 홍보 방법의 다양성(5)	15	
정성	사업운영 여건	• 장애학생 지원 운영 현황 및 역량(5) • 전담인력 배치 현황 및 전문성 강화 방안(10) • 센터 인프라(시스템 포함) 및 유관기관 연계 현황(5)	20	
	프로그램 운영 계획	• 프로그램 운영 계획의 구체성 및 합리성(15) • 프로그램 추진 체계(조직 구성, 참여 인력의 전문성 등)의 적절성(15) • 사업 성과 확산 및 관리의 우수성(15)	45	
	예산 계획	• 예산 계획의 적절성(10)	10	

라. 발달장애 특성화 유형 선정 계획

- (선정 규모)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학 - 발달장애 특성화 유형 1교
- (선정 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 (선정 조건)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대학, 전담인력 인건비에 대한 일정 부분 대학 부담(대응투자)
 - ※ 총 사업비의 50% 범위에서 인건비 사용 가능
- (사업 기간) 2025. 1. 1. ~ 12. 31.(12개월)
- (선정 평가 방법) 사업공모에 따른 사업계획서 서면평가 및 필요시 대면 평가를 통해 평가점수를 종합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가 지표) 대학 현황, 사업운영 여건, 발달장애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계획, 예산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구분	영역	세부 지표	평가 비중	
정량	대학현황	• 장애대학생 수(5) • 발달장애학생 수(5)	10	100
정성	사업운영 여건	• 학교 비전 및 센터와의 연계 전략(5) • 센터 구성 및 업무 현황(5) • 전담인력 배치 현황 및 전문성 강화 방안(10) • 센터 인프라(시스템 포함) 및 유관기관 연계 현황(10)	30	
	프로그램 운영 계획	• 발달장애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계획의 구체성 및 합리성(20) • 발달장애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추진 체계(조직 구성, 참여 인력의 전문성 등)의 적절성(20) • 사업 성과 확산 및 관리의 우수성(10)	50	
	예산 계획	• 예산 계획의 적절성(10)	10	

마. 수혜 제한

- (부정·비리대학 수혜 제한) 정부 재정 지원금의 투명하고 엄정한 집행 유도를 위해 대학의 부정·비리 사안에 대해 수혜 제한

4 사업 변경 사항

가. 사업 변경

- 원칙적으로 심의 종료된 사업 계획 및 세부 내용의 변경 시행은 불가
 - 다만, 부득이 한 경우 사전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공문 제출하여야 하고, 사안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
 - ※ 변경 사항 관련 사유 및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변경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 및 계획 제시를 통한 대학 책무성 강화 방안을 제시해야 함
 - 관련 사항은 반드시 대학 자체 심의 후, 사업 변경 신청

◆ 사전 승인이 필요한 사항(안)

- 프로그램 내용 변경, 지원 대상 변경에 관련된 사항 등
 - ※ [서식 1]을 참고하여 작성 및 제출

- 사업 예산 변경 계획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각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상의한 후 진행
 - 1) (대학) 공문(변경 계획 내용 포함) 발송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공문 접수 및 확인 후 승인 공문 발송 → (대학) 공문 접수 후 처리
 - 2) e나라도움 시스템 : 사업수행관리 → 신청관리 → 사업변경관리 → 사업변경신청 → '변경 내용 작성' → 상위보조사업자 승인 요청 → (대학) 공문 접수 후 처리
- 사업 내용 변경에 따라 당초 기대했던 사업 효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교부 결정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환수할 수 있음

나. 사업 수행 포기

- 대학의 사정으로 사업비 교부 통지 이후 사업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사유 발생 시점부터 1주 이내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보고 및 승인 요청
- 당해 연도 사업의 수행을 포기할 경우 사업비 전액 환수
 - ※ 사업 수행 포기 관련 후속 조치(사업 이행 완료 의무 관련 등)는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름
- 별도의 보고·승인 절차 없이 당해 연도 사업의 수행을 중단 또는 포기하였을 경우, 사업 제재기준([붙임 1] 참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5

성과관리

가. 목적

- 상시점검, 컨설팅 등을 통해 대학의 책무성 강화

나. 추진 방법

- (상시점검) 대학의 사업 추진현황 전반에 관한 사항을 상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점검결과, 시정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학에 개선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상시점검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사업 수행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대학에 대하여는 사업비 집행을 한시적으로 중지하거나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음
- (컨설팅) 참여 대학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행하여 건의사항 수렴, 우수사례 수집·확산 등
 - 참여 대학 유형별(진로·취업 지원, 통합 지원, 발달장애 특성화) 지원 체계 구축 실태 점검을 통해 우수사례 창출 유도
- (성과평가) 대학의 사업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개선 방향 도출 및 우수 모델 발굴·확산

다. 만족도 조사 및 사후 관리

- (만족도 조사) 사업 수혜 장애학생 및 사업 운영 관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정량 통계 분석 및 의견 수렴 포함)
 - 만족도 및 정책 수요자 의견 수렴으로 전문가 협의회를 거쳐 사업 환류
- (사후 관리) 사업 수행 대학에서는 장애학생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 관리 필요

6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가. 개요

1) 회계 일반사항

- (사업비 회계연도) 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는 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되, 사업비 집행 기간은 신청한 사업기간 내 집행 완료하여야 함
※ 사업비 집행기간 내 집행을 완료하여야 하며, 이 외의 집행 내역은 불인정 및 환수 조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등)에 따라 e나라도움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업비 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
- 사업비는 교비회계(대학회계) 내 별도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며, 입·출금과 이자 관리를 위해 별도 통장 개설·관리하여야 함
※ 타 재정지원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구분
- 사업비의 집행은 내부품의서, 지출원인행위서 등의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처리되고, 증빙서류는 사업 종료 후 보관(5년간 보관 의무)되어야 하며 회계 관련 증빙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관리·보존하여야 함

2) 사업비 집행

- 국고지원금은 사업비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집행해야 하며 사전에 심의 받은 내용으로 사업 진행하여야 함
※ 별도의 사업 변경 절차 없이 사전 심의 받은 내용과 상이하게 운영한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대학에서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구비·관리하여야 하며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집행등록은 월별로 집행 등록하여야 함
- 교비(대응투자)를 투입하여 진행하는 경우,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하여 집행등록 되어야 함. 실제 이체는 완료했지만 e나라도움을 통하지 않고, 교비(대응투자)를 지출하였다면 이체 구분을 보조금계좌로 이체 선택 후 실행하면 실제 금액은 이체되지 않고 교비 사용 내역이 기록됨

※ e나라도움 시스템 : 사용자 매뉴얼 → 보조사업자 → 상세업무명(자기부담금을 e나라도움을 통해 지출하지 않은 경우 처리방법)

※ 정산방법 : e나라도움 시스템(사용자 매뉴얼 → 보조사업자 → 정산관리(예치형) 참고

- 사업운영 대학은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사업비를 교부받아 회계 관리하고 운영결과를 시스템을 통해 정산하여야 함

※ 대학 자체 회계 기준에 따라 내부 기안을 실시하고,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 및 등록(거래처 계좌로 이체 혹은 보조금 계좌로 이체)한 이후 e나라도움에 개별 파일을 첨부하여 집행

- 사업비 잔액 및 이자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 시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e나라도움 시스템 : ‘사용자 매뉴얼 → 보조사업자 → 정산관리(예치형)’ 참고

- 사업비 세부 운영·집행 관련 사항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의하여 결정·처리하여야 함

◆ 세부 항목에 따른 지출 증빙자료

보조비목	보조세목	증빙자료	비고
인건비	보수	① 근로계약서(최초 1회) ② 지출문서 ③ 이체확인증	• 전담인력 인건비는 예산 총액의 50%내에서 사용 가능 • 인건비에 대한 대학의 대응 투자 필수
운영비	일반수용비	① 지출문서 ② 기본계획,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③ 강사료 관련 교내 지침(필요 시)	• 전자세금계산서 첨부 시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첨부 필수 • e나라도움 집행등록 시 거래처계좌가 아닌 보조금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이체확인증 (거래명세서) 첨부 필수
	일반용역비	① 용역 계약서 및 견적서(최초 1회) ② 기본계획,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③ 지출문서 ④ 전자세금계산서	
여비	국내여비	① 지출문서 ② 교내 여비 규정 ③ 여비 관련 결과보고서	

◆ 지출 문서

- 국고 또는 교비가 표기된 교내 지출 결의, 영수증 등을 포함한 지출 문서 제출
- 영수증 누락, 집행액과 영수증 금액의 불일치, 집행일과 영수증 발행일이 불일치 등은 증빙자료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지출 문서 제출 시 각별히 유의
- 회의비(식사 및 다과) 영수증은 세부 내역 첨부가 필수이며, 대학 내부 인원만으로는 회의비 집행 불가

- 유가증권(기프트콘, 상품권 등) 및 기념품 지급 시 지급 대상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으로 한정됨
금액은 1인당 2만원 이하로 제한하며 반드시 수령증(자필 서명 필수)을 증빙자료로 함께 제출
- 프로그램 참가자에 대한 직접적인 금전적 포상은 국고로 불가하며 기관방문 경비 및 선물은
회의비(식사 및 다과) 한도 내에서 집행 가능함
- 강사로 집행등록 시 강사로 관련 대학 내부 지침 등을 증빙자료로 함께 제출

◆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 프로그램 결과보고서에는 프로그램 내용, 참가자 명단(자필 서명 필수), 참여 대학 및 기관명,
프로그램 사진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또한, 프로그램과 참가자의 참여 방식을 대면 또는 비대면
여부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하여 보고서에 기재해야 함

◆ 전자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 첨부 시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첨부 필수
 - ※ e나라도움 집행 시 증빙자료 첨부 필수
 - ※ 증빙 첨부 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가 노출되지 않도록
가려서 첨부

3) 사업비 부당집행 방지

-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학’ 운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 사용 불가, 사업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
 - ① 사업 목적 외 예산 사용, ② 횡령 등 대학의 부정비리가 확인된 경우에는 사업비
삭감·지원 중단·사업비 환수 등 가능
 - ※ 「재정지원사업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 준수
- 정부 재정 지원금의 투명하고 엄정한 집행 유도를 위해 대학의 부정·비리 사안에
대해 수혜 제한
- 목적 외 집행 등 사업비를 부당 집행한 경우 지원 중단, 행·재정 제재 가능

나. 예산편성 및 변경

1) 2025년 예산편성 기준

지원 유형	국고지원	대학 대응투자
진로·취업 지원	50백만원 내외	전담인력 인건비 일부 대학 부담(자율) ※ 예산 총액의 50%내에서 인건비 사용 가능
통합 지원	100백만원 내외	
발달장애 특성화	100백만원	

2) 예산변경

- 사업비 항목(세목) 내 변경대학 자체 심의·의결기구를 통한 계획 수정 후 관련 내용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보고
 - － 사업 종료 1개월 전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승인 후 변경 가능
 - ※ 예산집행계획에 변경이 있을 시, 사전에 각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상의한 후, 안내 절차에 따라 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대학 자체 내부결재 문서 및 증빙자료는 e나라도움 시스템 입력 시 첨부)
 - 1) (대학) 공문(변경 계획 내용 포함) 발송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공문 접수 및 확인 후 승인 공문 발송 → (대학) 공문 접수 후 처리
 - 2) e나라도움 시스템 : 사업수행관리 → 신청관리 → 사업변경관리 → 사업변경신청 → ‘변경 내용 작성’ → 상위보조사업자 승인 요청 → (대학) 공문 접수 후 처리

7 사업 추진일정

○ 사업 일정 및 내용

일정	사업 내용	비고
'25. 1월	• 사업 기본계획 수립	교육부
2월	• 사업 공고	교육부
4월	• 대학 사업계획서 평가 및 선정	대교협
4월	• 참여 대학 세부 시행계획 제출	참여대학
4월~12월	• 대학별 국고보조금 교부 및 사업 운영	대교협, 참여대학
12월~'26. 1월	• 성과보고회 운영 및 대학별 결과보고 제출	대교협, 참여대학

※ 세부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신청 기간 및 서류제출 기간은 별도 안내

붙임 1 집행 관리 기준

□ 집행 관리 기준

유형	집행 관리 방안	
	위반 내용	재정제재 기준
국고, 교비 등의 횡령 및 유용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국고·교비 등의 횡령 및 유용, 보조금 부당집행	부당 집행된 국고보조금 전액 환수
사업비 과다 책정으로 인한 연례적 집행 부진	- 연례적 실집행을 부진 대학 ※ 예측 불가능한 장애대학(원)생 학적변동 등 부득이한 경우 제외	차년도 사업비 감액, 사업참여 제한 등 조치 가능

※ 위 집행 관리 기준 외에도 사안에 따라 관련자 신분상 조치 및 고발조치를 할 수 있음.

붙임 2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예시

1. 추진배경

□ 프로그램의 추진 배경에 대해 작성

2. 추진개요

□ 장애대학생 A프로그램

- 일시: 2025년 0월 0일(요일) 13:00 - 15:00
- 내용: 장애대학생 A프로그램 취업 준비 전략
- 방법: 프로그램 참가자의 참여 방식을 구분하여 작성
EX) (대면 / 비대면 / 대면 비대면 병행) 진행
- 장소: 프로그램 개최 장소
- 대상: 프로그램 참여 대상에 대해 상세하게 작성
EX) - 총 인원 15명 (장애학생 7명, 비장애학생 3명, 교직원 3명, 보호자 2명)
- 참여 대학 (기관) 3교 (00대학교, 00대학교, 00대학교)
- 주관: 프로그램 주관 대학 및 기관명 작성
- 세부일정: 프로그램 일정에 맞게 작성

시간	일정	강사
13:00 ~ 14:00	취업특강 1	00학과 홍길동 교수
14:00 ~ 15:00	취업특강 2	

○ 프로그램 사진

프로그램 진행 사진1	프로그램 진행 사진2	프로그램 진행 사진3
-------------	-------------	-------------

3. 참가자 명단

☐ 참가자 명단(자필서명 필수)

연번	이름	소속
1	김00	000학과
2	이00	000학과
3	박00	000학과
...	...	...
15	김00	교직원

참가자 명단 자필서명 증빙

4. 기대효과

☐ 프로그램의 기대효과 작성

5. 집행예산

☐ 프로그램 집행 예산 내역에 대해 세부적으로 작성

항목	사업비	세부내역
강사료	300,000	150,000원X2시간
홍보물 제작	200,000	현수막:100,000원X2개
식비	300,000	20,000원X15개
합계	800,000	

※강사료의 경우, 강사료 관련 교내 지침등을 증빙 자료로 제출

☐ 집행 내역에 대한 사진 증빙

집행 내역 증빙 사진1 EX) 홍보물 현수막	집행 내역 증빙 사진2 EX) 홍보물 포스터	집행 내역 증빙 사진3 EX) 다과
-----------------------------	-----------------------------	------------------------

※기념품의 경우, 수령자 명단과 자필 서명 첨부(유가증권 포함)

서식 1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대학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대학명		00대학교					
1. 주요 변경 내역							
항목		당초예산 (A)	변경예산 (B)	증감액 (B-A)	변경 사유		
인건비	보수						
	일반수용비						
운영비	일반용역비						
	사업추진비						
여비	국내여비						
2. 세부 산출 내역							
항목		세부 산출내역(변경)			당초예산 (원)	변경예산 (원)	
인건비	보수						
	일반수용비						
운영비	일반용역비						
	사업추진비						
여비	국내여비						
합계							
3. e나라도움 보조세목별 예산변경 내용							
e나라도움						사업관리 운영계획	
보조비목	보조세목	재원	당초예산(원) (A)	변경예산(원) (B)	증감(원) (B-A)	사업 관리 항목	변경예산(원)
인건비	보수	국고보조					
	보수	자기부담					
운영비	일반수용비	국고보조					
	일반용역비	국고보조					
여비	국내여비	국고보조					
	국내여비	자기부담					
합계							
위와 같이 사업 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합니다. 2025년 월 일 00대학교 총장							

서식 2 자부담 우선 집행예외 지정 신청서

2025년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학 운영 사업 자부담 우선 집행예외 지정 신청서

■ 대학명 :

■ 예산담당자 : (서명 또는 인)

■ 사업비

(단위 : 천원)

국고지원금 총액(A)	자기부담금 총액(B)	사업비 총액(A+B)

■ 자부담(대학 대응투자금액) 우선 집행예외 지정 신청 사유

보조비목	보조세목	국고보조금	자기부담금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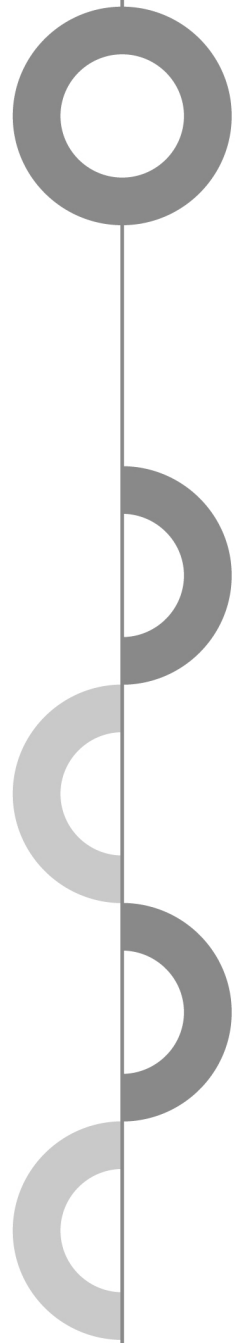
위와 같이 자부담 우선 집행예외를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CHAPTER

IV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학 운영 사업 컨설팅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학 운영 사업 컨설팅

1. 목적 및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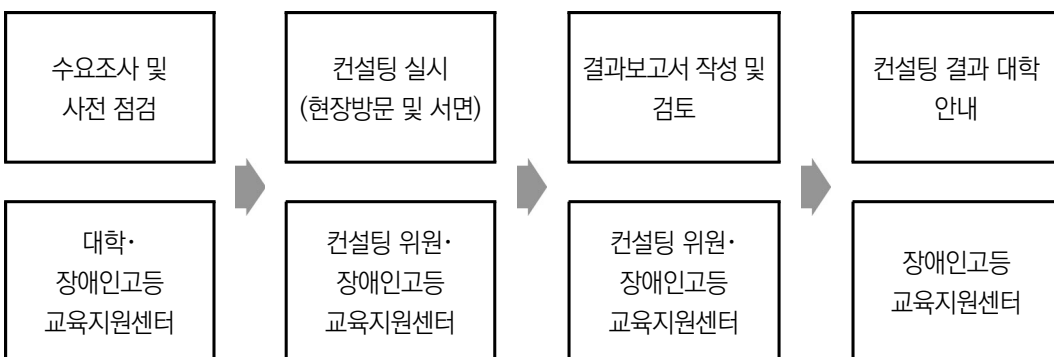
- (목적) 「2025년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학 운영 사업」 컨설팅을 통한 장애대학생 진로·취업지원 활성화 및 대학의 교육여건 제고
- (대상 기관) 「2025년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학 운영 사업」 선정교 10교

2. 운영 방향

- (맞춤형 컨설팅 제공) 대학별 수요를 반영한 컨설팅을 통해 현장 중심의 실질적 문제 해결 및 사업 운영 역량 강화
- (대학별 소통 활성화) 대학별 사업 담당자 간 상호 컨설팅 운영을 통해 사업 관계자 간 소통 활성화 지원

3. 컨설팅 절차 및 방법

- (추진 절차)



[그림 IV-1] 컨설팅 추진 절차

- 사전 점검에서 컨설팅 위원은 전년도 사업결과 보고서와 대학별로 제출한 컨설팅 요청사항(서식 3) 참조)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대학에서 제출한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자체점검표와 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해 예산집행 내역을 중점적으로 검토

- 컨설팅은 대학 현장을 방문하여 대학 관계자와 함께 대면으로 실시하고, 사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에서 준비한 자료(사업계획서, 사업성과 등) 확인과 함께 담당자와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당일만 실시하고, 3시간 내외 진행)
- 컨설팅 실시 후에는 대학별 컨설팅 주요 결과에 대해서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작성
-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대학에 송부하여 추후 사업 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 컨설팅 방법: 개별 대학 현장방문을 통한 대면 컨설팅(대학 요청 시 서면·온라인 운영 가능)
- 컨설팅 참석자
 - 대학: 사업 참여대학 부서장 및 업무담당자
 - 외부: 컨설팅 위원,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장애인고등교육 지원센터 등

4. 컨설팅 위원 구성 및 역할

- 컨설팅 위원 구성
 - 컨설팅 위원은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사업 운영위원회 위원, 정책연구진, 고등교육전문가, 특수교육전문가,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의 센터장, 사업운영 관계자 등으로 구성
- 컨설팅 위원 역할
 - 컨설팅 위원은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학 운영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컨설팅을 제공함
 - 컨설팅 위원은 컨설팅 이후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가 제공한 양식에 따라 개조식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파일로 제출하고, 이 결과보고서는 대학에 공문으로 전달함
 - 컨설팅 과정에서 대학에 대해 알게 된 정보나 컨설팅 결과는 일체 비밀을 지켜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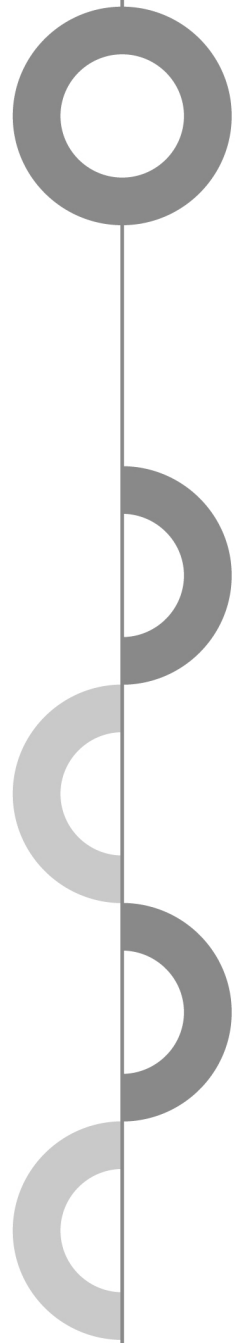
서식 3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학 운영 사업 컨설팅 질문지

대학명			
담당자	성명		연락처
	email		
컨설팅 영역 (해당 영역 체크)	☐ 프로그램 운영 및 성과 확산		☐ 대학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 사업 운영 및 예·결산 집행 등		☐ 기타
컨설팅 요청 내용			
프로그램 운영 및 성과 확산	예. 참여학생 모집 확대를 위한 효율적인 홍보 방안, 장애학생 전문 상담사 및 강사 섭외 방안 등 프로그램 운영 시 애로사항 예. 프로그램 성과 관리 및 확산 방법 등		
대학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	예. 권역 내 대학 간 효과적인 협력 사례 등 예. 장애학생 지원 관련 유관기관의 네트워크 구축 방법 등		
사업 운영 및 예·결산 집행 등	예. 사업 계획 변경 절차 및 방법, 예산 집행 및 정산 방법 등 예. 전담인력 전문성 강화 방안 등		
기타	예. 사업 관련 기타 요청사항 등		

부록

2025년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학 운영 사업 공고 (사업신청서 및 관련 서식)



교육부 공고 제2025-72호

「2025년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학 운영 사업」 참여대학 모집 공고

권역별 장애대학생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2025년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학 운영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8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 주 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박 상 규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학 운영 사업

나. 사업목적

- 장애대학생 지원 체계 강화를 통해 **장애학생의 실질적 학습권을 보장** 하고, **맞춤형 진로·취업 지원**을 통해 **사회통합 활성화**
- 권역별 장애대학생 대상 **진로·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포함한 **교육활동 및 권역별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역량 강화 지원**
- **발달장애 학생**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성과 공유·확산 지원**

다. 사업기간: 2025. 1. ~ 12.(12개월)

라. 지원규모: 총 700백만원

※ 학교별 지원 규모는 대학의 신청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사업내용

- (내용) 권역별 장애대학생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장애학생 지원 선도 대학'(진로·취업 지원, 통합 지원, 발달장애 특성화 3개 유형) 지정·운영
 - (진로·취업 지원 유형) 권역별 장애대학생 대상 맞춤형 진로 교육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 (통합 지원 유형) 진로·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포함한 권역별 대학의 장애학생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역량 강화 등
 - (발달장애 특성화 유형^{신규}) 발달장애 학생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성과 공유·확산 지원

2. 사업 신청 일정 및 내용

구 분	신청일정 및 내용
접수기간	2025. 3. 12.(수) ~ 26.(수) 15일간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서약서, 동의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 각 1부 [(붙임) 서식(양식) 참조]
제출방법	전자문서(수신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 공문 제출

※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3. 사업 계획

가. 진로·취업 지원 유형 선정 계획

- (선정규모) 진로·취업 지원 유형 7~8교(신규 선정)
- (신청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 ※ 2025학년도 재정지원 가능 대학 대상
- (신청 가능규모) 1교당 50백만원 내외

나. 통합 지원 유형 선정 계획

- **(선정규모)** 통합 지원 유형 **2~3교**
- **(신청대상)** '24년 장애학생 맞춤형 진로 및 취업지원 사업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 중 희망 대학
 - * 가톨릭관동대, 강남대, 경민대, 나사렛대, 대구대, 부산대, 인천대, 전북대, 제주대, 한경국립대
- **(신청 가능규모)** 1교당 100백만원 내외

다. 발달장애 특성화 유형 선정 계획

- **(선정규모)** 발달장애 특성화 유형 **1교(신규 선정)**
- **(신청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 ※ 2025학년도 재정지원 가능 대학 대상
- **(신청 가능규모)** 1교당 100백만원

라. 공통사항

- **(신청유형)** 각 유형별 중복 지원은 가능하나 선정은 1개 유형만 가능함
- **(선정조건)**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대학, 전담인력 인건비 일부 대학(대응투자) 부담
 - ※ 예산 총액의 50%내에서 인건비 사용 가능
- **(선정평가)** 사업공모에 따른 **사업계획서 서면평가 및 필요 시 대면 평가**를 통해 평가점수를 종합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 평가항목 등 세부사항은 사업 세부 추진계획 참조
 - ※ 선정 결과에 따라 해당 대학의 소재 및 권역별 장애학생 수('24.8. 대학정보 공시 기준) 등을 고려하여 대학별 담당 권역 조정 가능

4. 행정사항

○ e나라도움 교육

- 일시/장소: 2025년 4월 중/추후 안내 예정
- 참석대상: 사업 선정 대학의 담당자(참석 전 e나라도움 회원가입 필수)
※ 사업 선정 대학 대상 신청접수 및 일정 별도 안내

○ 문의 안내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교육지원실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 02-6915-7602, 7605, 7607 / 이메일 support1@kcue.or.kr)
-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는 교육부(www.moe.go.kr)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www.kcue.or.kr) 누리집 참조

붙임 사업신청서 및 관련 서식 1부. 끝.

붙임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학 운영 사업 [서식]

□ 사업 신청 방법

- 제출 일정: '25. 3. 12.(수) ~ 26.(수) 24시까지
- 제출 내용: 제출 서류 참고
- 제출 방법: 공문으로 제출(수신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제출서류]

- [서식 1] 사업신청서(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포함)
- [서식 2] 사업계획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

□ 일반 사항

- 사업계획서 목차와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본 요청서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을 추가하여 제안할 수 있음
 -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것
- 인용 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 비율 산정 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기재(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금액의 경우는 제시한 금액단위 이하는 버림
- 작성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부분에 "해당 없음"으로 기술

□ 사업계획서의 효력

- 필요 시 신청기관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본 사업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신청기관의 부담으로 함
- 제출된 모든 문서는 심사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 기관에 공개하지 않음
- 제출된 사업계획서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자격이 상실되고, '교육부'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수반되는 비용은 신청기관의 부담으로 함

서 약 서

본 대학은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학 운영 사업」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서류는 성실하게 작성·제출하며, 만약 허위 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만약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취소(기지원금 전액 반납) 및 향후 교육부 사업에의 참여제한 등 처분을 감수하겠습니다.
3. 사업계획서 평가를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등 사업시행기관 선정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신청기관:

대 표: (직인)

교육부장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귀하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학 운영 사업」 신청 사업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학 운영 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책임자: 성명, 직급/직위, 소속부서, 전화, E-Mail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학 운영 사업 신청	<u>1년</u>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사업책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사업책임자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2025년 월 일

교육부장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귀하

[서식 2]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학 운영 사업」 사업계획서			
신청 유형	☐ 진로·취업 지원 유형	☐ 통합 지원 유형	☐ 발달장애 특성화 유형
	※ 신규 참여 대학 '통합 지원 유형' 지원 불가 ※ 중복 지원하는 경우에는 각 유형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사업기간		참여인력	명
총사업비	총 원	국고보조금	총 원(%)
		대응투자 (교비)	총 원(%)
		※ 예산 총액의 50%내에서 인건비 사용 가능 (인건비에 대한 대학의 대응투자 필수)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학 운영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사업책임자: (인)			
상기 사업이 국고보조금에 의하여 수행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이며 소정의 기관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기관장: (직인)			
교육부장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귀하			

총 10쪽 내외 작성

I. 대학 현황

※ 대학 현황(소재지, 학제 및 설립유형, 역사, 재학인원, 장애유형별 재학생 현황, 특성 등)

II. 사업 운영 여건

※ ① 학교 비전 및 장애학생지원센터 연계 전략, ② 장애학생지원센터 구성 및 업무 현황, ③ 전담인력 배치 현황 및 전문성 강화 방안, ④ 장애학생지원센터 인프라(시스템 포함) 및 유관기관 연계 현황

III. 프로그램 운영 계획(유형별로 선택하여 작성)

※ 유형1-진로취업형: ①장애대학생 진로·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계획, ②장애학생 지원 관련 권역 내 대학 지원 계획, ③지역사회 연계방안, ④사업 성과 확산 및 관리 계획

※ 유형2-통합형: ①장애대학생 진로·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계획, ②장애대학생 교육 활동 지원 프로그램 운영 계획, ③장애학생 지원 관련 지역사회 연계 및 전국 대학 지원 계획, ④사업 성과 확산 및 관리 계획

※ 유형3-발달장애 특성화형: ①발달장애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계획, ②발달장애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추진 체계 구축 계획, ③사업 성과 확산 및 관리 계획

IV. 예산 계획

※ 예산 운용 계획(학교 대응 투자 계획 포함) 등

항 목		세부 산출 내역	예산		비 고
			국고	대응	
인건비					
운영비					
여비					
계					

※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학 사업 전담인력 인건비*는 예산 총액의 50% 내에서 사용

* 인건비에 대한 대학의 대응 투자 필수

V. 추진 일정

사업 내용	월별 추진일정											
	1~2	3	4	5	6	7	8	9	10	11	12	
기획												
·												
·												
·												

2025년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학 운영 사업 업무 매뉴얼

인 쇄 2025년 7월
발 행 2025년 7월
발 행 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주 소 (08504)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606 대성디폴리스 A-23층
대 표 전 화 02) 6919-3800
홈 페이지 www.kcue.or.kr
인 쇄 처 경성문화사

한국대학교육협의회<비매품>

*이 책자의 일부 혹은 전체를 허락 없이 변경하거나 복제할 수 없습니다.

**2025년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학 운영 사업
업무 매뉴얼**

